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단2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 2020. 4. 10.

판결 선고 2020. 5. 2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33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5. 22.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1997. 10.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B는 망인의 차남, F은 망인의 3남, 망 G(2001. 11. 11. 사망), H는 망인의 딸들이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처와 아들이고, I은 망 G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경기 가평군 J, K,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경기 가평군 O, P, Q, R, S, T 각 토지(이하 'U리 토지'라 한다)가 있다.

다. 피고 B는 2017.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2017. 8. 14. U리 토지에 관하여 1997.10.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7. 8. 22.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V리 토지판매대금 분배금액 약정서

1. 지출금 계 3억 500만 원

부동산 2,500만 원, 변호사 1,000만 원, 이장비 2,000만 원

법무사 4,000만 원, F 소송비 5,000만 원

H 1억 5,000만 원, 상속세 1,000만 원(등, 취득세 : V리, U리)

2. 토지판매대금 7억 6,000만 원 - 3억 500만 원(지출금) = 잔액 4억 5,500만 원

3. 소요경비 A 2,000만 원(21년) + B 3,500만 원(경비) = 5,500만 원

잔액 4억 5,500만 원 - 소요경비 5,500만 원 = 4억 원(총 잔액)

4. 분배 > 합 4억 원을 아래와 같이 분배합니다.

A, B, F, I 각 1억 원씩 분배

7. A에게 지급해야 할 V리 토지판매 분배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B는 2017.

8. 31. A에게 직접 수령토록 조치한다.

마. 피고 B는 2017. 5. 11. 재단법인 W(이하 'W'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59,200,000원1)에 매도하였고, W이 2017.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바. W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C 명의 X은행 계좌로 2017. 5. 11.

303,680,000원, 2017. 6. 29. 415,520,000원, 2017. 7. 31. 40,000,000원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X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5,000만 원을 이미 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은 7,00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원은 1억원이라고 다투나, 매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중 1억 원을 분배하기로 하는 이외에 추가로 원고가 21년 동안 부담한 소요경비를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분배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약정서 제7항)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도소득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분배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토지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8. 6. 1.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651,820원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4분의 1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원고는 피고 B가 위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세금 202,651,820원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50,662,955원(= 202,651,820원 / 4)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B의 주장은 이유 있다(양도소득세의 미납으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피고 B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받은 이상,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할 의무는 피고 B에게 있다 할 것이고 그 미납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어,가산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19,337,045원(= 70,000,000원 - 50,662,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 B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다른 X은행 계좌와 피고 D 명의 계좌 또는 피고 D이 관리하는 사업자계좌로 이체하고, 피고 D은 위와 같이 위 토지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은 피고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피고 C, D 명의 또는 관리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전부 피고 B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

1) 매매계약서에는 75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759,200,000원으로 보인다.

2) 피고 B는 양도소득세가 245,720,78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